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[고영찬 의원 발의]

의안번호	2638
------	------

발의일자 : 2024. 11. 12.

발 의 자 : 고영찬 의원

찬 성 자 : 엄셋별, 장규권 의원

## 1. 제안이유

다섯 자녀 이상의 초(超)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의와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지원 대상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, 궁극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출산·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초(超)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의 추가(안 제2조제2호의2 신설)

나. 초(超)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사항 추가(안 제5조의2 신설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8조, 제9조, 제10조

나. 예산조치: 필요시 예산조치

다. 기 타

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첨부

2) 입법예고: 2024. 11. 15. ~ 2024. 11. 21.

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“초(超)다자녀 가정”이란 다섯 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초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) ① 구청장은 초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,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 현행조례

##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

[시행 2023. 07. 20.] [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359호, 2023. 07. 20., 제정]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저출산 등에 따른 사회·경제적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건강한 양육과정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가정”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·양육·보호·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.
2. “다자녀 가정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.
3. “다자녀 가정 우대카드”란 서울시 다둥이행복카드를 말한다.

**제3조(적용범위)**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서울시 다둥이행복카드 발급대상자이며, 서울특별시 금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한다.

**제4조(구청장의 책무)**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다자녀 가정 지원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다자녀 가정의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비용의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우대 및 지원)** ①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에게 구에서 설치·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해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 또는 개별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관련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구의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정책을 수행하거나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,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**제6조(우대 및 지원 중단)**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.

② 다자녀 가정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.

**부 칙(제1359호, 2023.7.20)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관계법령

## □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

[시행 2024. 4. 24.] [법률 제20112호, 2024. 1. 23., 일부개정]

제8조(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 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·지원하여야 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9조(모자보건의 증진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부·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모자보건의 증진과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·출산·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및 가족구성원의 협력의 중요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·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,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10조(경제적 부담의 경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5. 23.>

② ~ ⑥ (생략)